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10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시 가입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 ...	3

I. 개요

1.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1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시 가입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및 심사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의5(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및 심사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

현행	개정안
	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나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

현행	개정안
제119조(과태료) ①·② (생략)	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한다.
제119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1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으로서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²⁾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³⁾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경우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⁴⁾.

□ 현재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신상 관련 정보(성명, 주소, 직장,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정보(소득, 재산), 요양급여 관련 정보(의료기관 이용기록, 상병명), 건강검진 관련 정보 등이 있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자료제공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관별 내부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는 않고 있음.

- 건보공단: 내부지침인 「공단 수사기관 대상 개인 민감정보 제공기준」에 근거하여 ① 기본정보(진료일, 요양기관명 등)에 대해서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정보주체의 건강상태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② 민감정보(상병명, 의사소견, 장기요양 등급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음.

< 건보공단: 수사기관 대상 개인 민감정보 제공 기준(내부지침) >

- (요청 목적) 피의자 소재 파악·사실관계 확인
- (제공 기준) 수사기관이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정보주체의 건강상태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정보주체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상병명 등)는 압수수색 영장 등이 제시된 경우에만 제공
 - 기본정보(진료일, 요양기관명 등): 사건번호 기재, 수사기관이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공문으로 요청 검토 후 제공
 - 민감정보(상병명, 의사소견, 장기요양 등급 등): 압수수색영장 확인 후 제공
 - 피의자 외 정보(피해자, 제3자): 민감정보 제공기준과 동일 적용

- 심평원의 경우, 내부지침인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수사 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수사목적이 구체적인 경우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간(2020년~2024년) 수사목적에 따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경우 총 260만 5,17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총 3,139건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사목적에 따른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 현황(건보공단) >

(단위: 건)

기관별 연도별	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계	2,605,173	411,343	2,193,704	35	91
2024년	183,944	92,847	91,081	-	16
2023년	145,827	65,922	79,892	-	13
2022년	79,207	22,059	57,086	-	62
2021년	1,284,670	124,756	1,159,879	35	-
2020년	911,525	105,759	805,766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사목적에 따른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 현황(심평원) >

(단위: 건)

기관별 연도별	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계	3,139	191	2,948	-	-
2024년	680	38	642	-	-
2023년	618	43	575	-	-
2022년	640	43	597	-	-
2021년	619	32	587	-	-
2020년	582	35	547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및 심사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이 불필요하게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제공받는 것을 방지하고 가입자의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⁵⁾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 「의료법」⁶⁾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하여 수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기관에 대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경우에는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수사대상자인 가입자에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보할 경우 자신이 수사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범죄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찰청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원활한 범죄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도모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통보 여부 또는 유예기간·횟수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통보주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이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7)의 입

7)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법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이 통보 또는 유예 여부 등을 판단하여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
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가입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통보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⁸⁾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두는 방안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정보주체가 신고한 주소 등

-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8)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오(誤)송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공내역을 통보받은 후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에 따라 수사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정보제공 요청 주체이자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중요성 및 보안, 진행상황, 정보의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수사기관 등이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보공단 및 심평원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법령 간 형평성 문제 및 수사 협조 업무 위축 등이 우려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경찰청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국가형벌권 실현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경찰청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기 사건 수사, 수배자 검거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할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국가형벌권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해당 통보가 공정한 사법·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할 경우 최대 9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의료사고,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 등에 대한 수사의 경우 9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배자 검거,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자료요청에 따른 통보 시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가 통보내용을 확인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건보공단이 수집·보유하는 가입자의 연락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계받은 공부(주민등록)상 주소 및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입력한 전화번호인데, 해당 연락처가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 제3자의 수령·유출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상병정보나 수사진행 사실이 노출되어 정보주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행방불명, 도피 등으로 인해 일정한 거소가 없는 경우 통보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통보대상 관리, 통보유예 대상 여부 검토 등에 따른 건보공단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

고자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심평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된 건강정보 외에 환자의 연락처 및 주소지 등을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정보제공자가 아닌 정보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 등이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03